

의안번호	2217002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F0466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%p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1,622억원, 2031년 2조 4,326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9조 2,694억원(연평균 1조 8,5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1,622	-21,256	-22,234	-23,256	-24,326	-92,694	-18,539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55조제1항 (세율)	○ 중소·중견기업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 차등화 － (수도권) 현행 법인세율 유지 － (비수도권) 과표 구간별 세율 3%p 인하 <현행> <table><tr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2억~200억원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200억~3천억원</td><td>22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5%</td></tr></table> ⇒ <개정안> <table><tr><th>본사 소재지</th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수도권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2억~200억원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200억~3천억원</td><td>22%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비수도권</td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5%</td></tr><tr><td>200억~3천억원</td><td>19%</td></tr><tr><td>2억~200억원</td><td>17%</td></tr><tr><td>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7%</td></tr></table>	과세표준 구간	세율	2억원 이하	10%	2억~200억원	20%	200억~3천억원	22%	3천억원 초과	25%	본사 소재지	과세표준 구간	세율	수도권	2억원 이하	10%	2억~200억원	20%	200억~3천억원	22%	비수도권	3천억원 초과	25%	200억~3천억원	19%	2억~200억원	17%		2억원 이하	7%	
과세표준 구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억~200억원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억~3천억원	2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사 소재지	과세표준 구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도권	2억원 이하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~200억원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0억~3천억원	2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수도권	3천억원 초과	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0억~3천억원	1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~200억원	1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이하	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55조제1항 (세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중 통과되어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율변경 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하지만,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효과의 일부가 2027년에 발생한다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신고기준 2024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 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
 - 향후 본사 소재지 및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의 분포는 신고기준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
 - 향후 1법인당 과세표준은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2025~2029 : 연평균 NABO 법인세 증감률 전망치로 추정(4.6%)
 -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이 2020~2024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 -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20~2024년 평균 35.0%
 -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'가결산 기준' 비율: 2020~2024년 평균 21.9%
-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 - 본사 소재지별 법인세율 차등에 따라 본사 이전을 비롯한 기업의 제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, 동 추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~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」, 2025.10월

3. 상세 추계내역

□ (법인세 신고현황) 과세표준 구간 및 본사 소재지별로 2024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, 과세표준, 1법인당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지역별 법인세 신고 현황: 2024년 신고법인 기준(2023년 귀속)

<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>

과세표준 구간	기업 수(개) ¹⁾	과세표준(억원)	1법인당 과세표준(억원)
2억원 이하	536,565	108,210	0.20
2억원~200억원 이하	68,694	732,534	10.7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499	207,003	414.8
3,000억원 초과	u ²⁾	u ²⁾	3956.5

<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>

과세표준 구간	기업 수(개) ¹⁾	과세표준(억원)	1법인당 과세표준(억원)
2억원 이하	350,000	83,360	0.24
2억원~200억원 이하	44,720	417,547	9.3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234	92,667	396.0
3,000억원 초과	u ²⁾	u ²⁾	3241.0

주: 1) 과세표준이 “0”이거나 “음수”인 기업은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임

2) u: 법인수가 적어 비식별 처리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과세표준 전망) 과세표준 구간별 1법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감률 전망치를 적용해 추정

[표 3] 지역별 1법인당 과세표준 전망(귀속연도 기준)

<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>

(단위: 억원)

과세표준 구간	2027	2028	2029	2030	2031
2억원 이하	0.31	0.33	0.34	0.36	0.37
2억원~200억원 이하	16.5	17.3	18.1	18.9	19.8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642	672	703	735	769
3,000억원 초과	6,126	6,408	6,703	7,011	7,334

<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>

과세표준 구간	2027	2028	2029	2030	2031
2억원 이하	0.37	0.39	0.40	0.42	0.44
2억원~200억원 이하	14.5	15.1	15.8	16.5	17.3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613	641	671	702	734
3,000억원 초과	5,018	5,249	5,491	5,743	6,008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산출세액) 개정안에 따른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법인세율 변동과 2024년 신고기준 법인 수를 활용하여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계

- 수도권 소재 법인의 경우 세율변경이 없으므로,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서만 산출세액 변화가 나타남

[표 4] 지역별 법인의 산출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>

과세표준 구간	2027	2028	2029	2030	2031
2억원 이하	-3,872	-4,050	-4,237	-4,432	-4,636
2억원~200억원 이하	-19,396	-20,289	-21,222	-22,198	-23,219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4,305	-4,503	-4,710	-4,926	-5,153
3,000억원 초과	-151	-157	-165	-172	-180
계	-27,724	-28,999	-30,333	-31,728	-33,188

주: 수도권 소재 법인은 변동 없음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부담세액) 앞서 추정한 산출세액 변화분에 공제·감면 등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(2024년 신고기준)을 적용

-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: 72.1~91.8%

[표 5] 지역별 법인의 부담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<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>

과세표준 구간	2027	2028	2029	2030	2031
2억원 이하	-3,295	-3,446	-3,605	-3,771	-3,944
2억원~200억원 이하	-13,982	-14,625	-15,298	-16,001	-16,737
200억원~3,000억원 이하	-3,767	-3,940	-4,121	-4,311	-4,509
3,000억원 초과	-138	-145	-151	-158	-165
계	-21,181	-22,156	-23,175	-24,241	-25,356

주: 수도권 소재 법인은 변동 없음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납부시점 배분)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 효과 기간을 반영

-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3~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
- 중간예납세액 비중과 가결산 비율 감안 시, 세수효과의 7.7% (=35.0%×21.9%)가 당해 귀속연도에 영향을 줌²⁾
 -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20~2024년 평균 35.0%
 -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'가결산 기준' 비율: 2020~2024년 평균 21.9%

[표 6]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

납부시점 귀속 사업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2027	(중간예납)					
2028		(중간예납)				
2029			(중간예납)			
2030				(중간예납)		
2031					(중간예납)	

□ 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%p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1,622억원, 2031년 2조 4,326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9조 2,694억원(연평균 1조 8,5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1,622	-21,256	-22,234	-23,256	-24,326	-92,694	-18,539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2)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은 2025년부터 종전의 선택적 방식(직전연도 기준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선택)에서 가결산 기준 의무 적용 방식으로 단일화되었으나, 2025년 귀속분은 현재 과세 절차가 진행 중으로 관련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, 본 추계에서는 종전 방식에 기초하여 납부시점을 배분함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